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927 가. 위증교사
나. 위증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김용식(기소), 최재순, 안성민, 문태권, 류제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엽, 김종근, 조원철, 정주희, 김희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권혁도, 서왕식(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4. 11.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 1 -

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명확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 측 변호인의 "그러던 중 E은 증인에게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A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C 측 고위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 측 변호인의 "당시 E이 'C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의 중'이라는 말을 증인에게 직접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판장의 "증인이 알기로, E과 C 측 사이에 'D는 취하하고 A 쪽으로 돌아가자'는 협의가 D와 피고인(A)의 구속 전에 있었다는 것인가요. E이 두 사람을 고소한 시점, D가 구속된 시점, 그리고 피고인(A)이 구속된 시점을 구분한다면, 어느 시점에 E과 C 측 사이에 협의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협의는 피고인(A)이 구속되기 전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재차 "그렇다면 D의 구속 후 피고인(A)의 구속 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말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C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의 중'이라는 것을 E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무엇에 대해 협의의 중이라는 내용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선거 전에 C를 상대로 한 이 일이 언론에 불거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실익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협의의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D나 피고인(A)에 대한 고소취하의 협의었나요, 아니면 C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에 대한 협의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A은 2002년 C의 프로듀서(PD) D와 공모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A은 2018. 5. 29.경 진행된 '2018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C 초청 토론회'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위 발언과 관련하여, A은 'D와 공모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도지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마치 D가 본인과 인터뷰 중 E으로부터 진화를 받고 자신과 무관하게 검사를 사칭하며 E과 통화한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후보자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자신의 경력 내지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9. 2. 14. 14: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2018고합266호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재판에 A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

- 2 -

"C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하느냐에 대한 협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측이 ##시장 재선을 위하여 C 측과 '검사사칭' 사건의 책임을 A에게 몰기 위해 D에 대해서만 고소취소를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A의 주장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E으로부터 'C 측과 D에 대한 고소취소를 협의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명확하나 없는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범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3, 84, 85, 87)

1. 2018. 12. 11. 공소장(성남지청 2018형제26856 등), 2019. 1. 17.자 B에 대한 증인신문서(제5회),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고합266 등 공판조서(제5회), 2019. 2. 14.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통화녹음 파일 저장 CD 1장, 『A진술서(공직선거법위반).hwp』 파일 출력물, 『A진술서2.hwp』 파일 출력물, 압수를 실물 사본[2018. 12. 31.자 B 수기 메모 진술서], 압수를 실물 사본[2019. 1. 7.자 진술서(최종)], 2019. 1. 8.자 통화녹음 녹취서[B, G], 2019. 1. 21.자 통화녹음 녹취서[B, G], 2018. 12. 22.자 통화녹음 녹취서(1)[A, B], 2018. 12. 22.자 통화녹음 녹취서(2)[A, B], 2018. 12. 24.자 통화녹음 녹취서[A, B], 2019. 1. 18.자 통화녹음 녹취서[A, B]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3, 4, 7, 8, 9, 10)

- 3 -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력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와 C 사이에 있었던 혐의'에 관한 진술을 해 달라는 A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위 혐의의 주체, 내용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관하여 마치 E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경우 앞서 유죄로 인정된 증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언부분에 한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¹⁾

1) 피고인 B에 대하여,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피고인 B의 증언들은 위증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 B의 각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는 피고인 A의 위증교사 범죄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도 그 구성요건으로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D 등이 피고인을 주범으로 몰아주면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혐의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정치적인 보복을 당해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이를 허위라고 전혀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2002년 검사사칭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제차 반복하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 'E와 C 측이 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혐의가 있었다'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시킬 증거를 물색하다가 E이 2015.경 이미 사망하여 본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되기 어려운 점, 당시 E의 수행비서로 활동한 B이 H와 함께 I 개발사업에 관여하는 등 본인의 측근인 H과 친분이 두터웠던 점, B이 **도지사인 본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B을 증인으로 내세워 B으로 하여금 마치 당시 지방선거가 임박했던 E이 ##시장 재선에 방해가 되는 피고인을 주범으로 몰아 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C 측과 D에 대해서만 고소취소를 하기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증언하게 하여 검사사칭 사건은 피고인이 E 측으로부터 정치적 보복을 당한 것이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토론회 당시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도지사인 피고인의 정책비서관 J을 통해 H에게 B이 본인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지 알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H이 B에게 피고인의 부탁을 전달하며 검사사칭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지 물어보았으나, B은 H에게 '오래되어서 당시 사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2년 C의 PD D와 공모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사건(이하 '검사사칭 사건'이라고 한다)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5. 29.경 있던 '2018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C 초청 토론회'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위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도지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마치 D가 본인과 인터뷰 중 E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과 무관하게 검사를 사칭하며 E과 통화한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후보자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자신의 경력 내지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이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라고 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사사칭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검사사칭 사건은 E ##시장의 재선에 방해되는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C 측과 협의하여 실제 검사사칭을 한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대신 당시 E의 정책에 반대하던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간 사건이기 때문에 '2018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C 초청 토론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더라도 E이 C 측과 사이에

대상에 해당하느냐,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B의 증언들도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에 함께 기재하기로 한다.

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22. B에게 직접 전화하여 자신이 검사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고 말한 다음 "혹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저기 뭐 시장님(E)은 돌아가셨고"라고 말하고, "(E이) 고발을 했는데, 어쨌든 나를 잡아야 되잖아, PD(D)를 잡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시(E 측), C 측하고 얘기하고, PD(D) 측하고도 얘기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증명은 안됐지만, 'A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매우 정치적인, 또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거 같아"라며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B이 "기억도 잘 안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한 부분.. 저기"라고 답하며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자, 피고인은 다시 한번 B에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C하고 우리 시장님(E)하고는 실제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 "C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애.",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나를 처벌을 해야 좀 곤경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선거였으니까, 그리고 C 측은 자기들이 책임을 좀 줄여야 되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워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라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반복하여 말하면서 E

이 ##시장 재선을 위하여 검사사칭 사건의 책임을 본인에게 몰아 강하게 처벌하고자 C 측과 D에 대해서만 고소취소를 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소취소 협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B이 "어떤 취지로 그 저길 해야 되는지를 한번.."이라고 말하며 어떠한 내용으로 증언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 달라는 반응을 보이자, 피고인은 B에게 "예. 예. 내가 그 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내가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혹시 K 씨요?", "아, 그래요 K으로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 자료는 보낼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라고 말하며 K으로 보내 주는 변론요지서를 읽어보고 그곳에 기재된 본인의 입장에 맞추어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제차 B이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음에도,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걸 보내주시고"라고 말하자, 다시 피고인은 "그러시죠, 예. 제가 얘기해 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요."라며 B에게 제차 변론요지서를 열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이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라며 피고인의 요구에 맞춰서 허위 증언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통화가 끝난 후 피고인은 'E 측이 D에 대한 고소취소를 약속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C 측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D를 시켜 사칭복음을 한 것으로 D 등에게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는 내용 등 본인의 일방적 주장이 기재된 변론요지서를 그 무렵 K으로 B에게 전송하였고, B은 이를 열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24. B에게 다시 전화하여 B으로부터 K으로 전송받은 변론요지서를 충분히 열람하였다는 말을 듣자, B에게 "제가 우리 B 비서관(B)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친구들(D 등) 얘기는 '내가 인터뷰하면서 검사사칭 전화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마음먹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개네들(D 등)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가 핵심이잖아요."라고 말하고, 거짓말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에 어쨌든 제가 그때 뭐 들은 얘기, 뭐, D PD한테는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라면서, B에게 "그, 기억하세요혹시?"라고 물었으나, B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고소취하 해준다고."라고 답변함으로써 피고인은 2018. 12. 22.자 통화 이후 다시 한번 B이 E 시장과 C 사이에 피고인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B에게 '(E 측이) C 측하고 상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뭐 사실일 테고", "성남시 입장에서는 선거도 지금 압박한데 A이를 범죄행위를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입지도 좀 회복할 수가 있는 이익이 있었던 거고", "모두가 나를 잡아넣는데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의 얘기가 오간 걸로", "실제로 제가 알기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증언이 좀 있으면 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알 필요가 없고, 뭐 십수 년 지난 일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그때 당시에 'C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등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B에게 반복하여 설명하면서 그에 맞는 증언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에게 "공격 타겟은, 목표는 나였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서 C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던 것은 분명하고"라며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단정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B에게 E 측에서 C 측과 그러한 협의를 한 사람이 누

구인지를 물었으나, B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변론요지서에 그러한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읽어 보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이 E 측과 C 측이 피고인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차 B에게, '(E 시장 측이) 당시에 고소취소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고 (D가) 신경질 내고', "어쨌든 핵심은, B 비서관이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C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고 말하면서 E 측과 C 측 사이에 D에 대한 고소취소를 통해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하려는 협의나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으나, B은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나와서, 그나만 내부에서 사실 누가 C랑 연결했는지 모르는데, 일정이 애매할 수 있을 거예요"라며 당시 E의 수행비사로 근무하다가 E의 선거 지원을 위해 외부 선거캠프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E와 C 측이 D에 대한 고소취소를 협의하였다는 내용, 즉 피고인이 요구하는 증언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자 피고인은 B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하면서 B이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B은 제차 "지사님(피고인) 변론서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 내가 그때 수행을 안 하고 있어서"라며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변론요지서에도 피고인이 요구한 증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시 자신은 E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다시 한 번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즉 'E 시장과 C 사이에 피고인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에 관하여 B이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B에게 "일단은 어,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들은 이야기, 뭐 직접은 아니지만",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하어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B 비서관님 그거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뭐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뭐,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어쨌든 A을 걸어 놓아야 할 입장이었다."라고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B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해야 할 이익이 있는 E 측이 C 측과 검사사칭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기 위해 E이 D에 대해서만 고소취소를 하는 등의 협의'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였고, 결국 B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요구에 따라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며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증언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네, 큰 힘이 되네요."라며 감사 인사를 하였다.

B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고 본인의 기억이 아닌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들었던 내용과 피고인으로부터 K으로 전송받은 변론요지서 내용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8. 12. 31. **도지사인 피고인의 비서실장 L에게 K을 통해 진술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L는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L로부터 진술서 초안을 보고받아 열람한 뒤 L를 통해 B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

라'는 취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B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내용을 들으면서 당초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강조한 'C와 교감이 있었다는 내용', '당시의 내용 들었다', 'A이가 시킨 것으로 하면 고소취하하자' 등을 수기로 메모하였고, 이를 토대로 진술서 초안에 'E 시장이 고소취하 문제를 상의하였다', '당시 C, 후보자 캠프 등은 피고인에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다', 'C는 고소취하 문제로 E 시장과 대화가 있었다'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한 뒤, 2019. 1. 7. L에게 수정한 진술서 파일을 다시 전송하였고, L로부터 "수고했어"라는 문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본인이 의도한 대로 수정된 진술서를 받아보고, B이 진술서 내용대로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확신하여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B을 연결해 주어 증인신문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 2019.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담당 재판부에 'E의 수행비서였던 B이 당시 E이 그의 재산에 방해되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반면 C 측과는 D 등에 대한 고소취소에 관하여 계속 협의한 경과 등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B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 1. 23. B에게 "그러던 중 E은 증인에게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A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C 측 고위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 등의 질문이 기재된 '변호인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보내 그 질문내용을 숙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사는 증인신문기일 전날인 2019. 2. 13. B에게 '변호인 증인신문사항'에 있는 질문에 그대로 답변을 하면 된다고 알려 주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 13 -

이후 피고인은 A 측 변호인의 "그러던 중 E은 증인에게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A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C 측 고위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이하, 이 부분 증언을 '제1증언'이라고 한다).

또한, 피고인은 A 측 변호인의 "이러한 상황에서 E의 선거캠프 내에서는 'C를 두고 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지 않고, 피고인(A)을 공무원자격사칭의 주범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구속되게 하여야 한다, 강하게 가자.'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이하, 이 부분 증언을 '제2증언'이라고 한다).

이어, 피고인은 A 측 변호인의 "이후 E은 D에 대한 고소를 취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이하, 이 부분 증언을 '제3증언'이라고 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 측 변호인의 "당시 E이 'C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증인에게 직접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이하, 이 부분 증언을 '제4증언'이라고 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판장의 "증인이 알기로, E과 C 측 사이에 'D는 취하고 A 쪽으로 돌아가자'는 협의가 D와 피고인(A)의 구속 전에 있었다는 것인가요. E이 두 사람을 고소한 시점, D가 구속된 시점, 그리고 피고인(A)이 구속된 시점을 구분한다면, 어느 시점에 E과 C 측 사이에 협의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협의는 피고인(A)이 구속되기 전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재차 "그렇다면 D의 구속 후 피고인(A)의 구속 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말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이하, 이 부분 증언을 '제5증언'이라고 한다).

- 15 -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자신의 증언이 과거 자신이 시장으로 모시며 존경해 왔던 E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죄책감과 E의 지인이나 지지자 등 지역사회에서 제기할 비난 등을 우려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2019. 1. 24. 증인신문기일 당일 오전 A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하고, 이어서 L에게 심적 부담을 토로하며 '도저히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알린 후 증인신문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채 증언 여부를 고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고민 끝에 현재 도지사의 직접적인 요구에 상당한 중압감을 느껴 이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A의 교사에 따라 검사사칭 관련 허위 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으로부터 'C 측과 D에 대한 고소취소를 협의하였다'는 말을 마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1. J에게 차후 지정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알리고, 이후 다시 지정된 증인신문기일 당일인 2019. 2. 14. 점심 무렵 재판 직전에 J에게 A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증언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9. 2. 14. 14: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2018고합266호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재판에 A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선서 후 경협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명함에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를 하였다.

- 14 -

이어,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C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것을 E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무엇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선거 전에 C를 상대로 한 이 일이 언론에 불거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실익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협의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D나 피고인(A)에 대한 고소취하의 협의였나요, 아니면 C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에 대한 협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C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하느냐에 대한 협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이하, 이 부분 증언을 '제6증언'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증언을 마친 직후 J에게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대로 증언을 잘했다'고 알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측이 ##시장 재선을 위하여 C 측과 검사사칭 사건의 책임을 A에게 돌기 위해 D에 대해서만 고소취소를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A의 주장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E으로부터 'C 측과 D에 대한 고소취소를 협의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으며, E은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 자체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명함에도 없는 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증언한 것이었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II. 검찰청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 16 -

구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검찰청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위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종래 6대 분야에서 2대 분야로 줄여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청법 개정 이후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 9. 8.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된 것)'은 위증죄, 무고죄 등을 포함한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추가하였는데, 이는 상위 법률인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수사개시는 위법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도 위법한 절차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피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검찰청법의 개정 과정을 보면, 국회에서는 기존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이라는 문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개정되었다.

다. 결국 검찰청법은 종전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이나,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가 아닌 이상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외의 중요 범죄가 대통령령에 추가적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나 검찰청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관하여,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 9. 8.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은 위증죄를 포함한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외의 중요 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위 각 범죄가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가 아님은 분명하다.

마.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등 참조).

나.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지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나, 하위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검찰청법의 문언과 개정이유, 체계,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증죄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시킨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 9. 8.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된 것)'은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증죄는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수사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 한다.

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의 범위에 관하여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정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11조 제4호는 관련사건 중의 하나로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67(병합)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범죄에 관련된 위증범죄 사건인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67(병합) 사건의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67(병합)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인정한 위증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III.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사사청 사건의 경과

1) D는 C 'M'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로 재직하던 중, 2002. 5. 18. 22:00경 C에서 방영될 '○○N·O지구 P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당시 ##시장 E과 위 P 시행업체인 Q 주식회사 회장 R 등과의 유착 의혹 및 이들의 배후를 취재하게 되었다.

2) D는 위 취재와 관련한 협조, 자문을 얻기 위하여 당시 ○○N·O지구 P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피고인 A과 접촉하였다.

3) D는 2002. 5. 10.경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A의 사

무실을 방문하기 전 E의 수행비서였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E과 통화가 가능한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 B은 E의 현재 수행비서인 S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D는 ##시청 시장 비서실에 전화하여 소속 직원인 T에게 자신을 '검찰청 검사실'이라고 소개하며 E과의 통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후 S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에서 시장님을 찾는 전화가 왔으니, 연락을 해봐라'고 이야기 하면서, D의 전화번호를 S에게 전달하였고, S은 E에게 '검찰청에서 시장님을 찾는 전화가 왔다'고 보고하였다. E은 S으로부터 D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전화를 하였고, D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를 해 달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1166-1172쪽).

4) D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해 달라'는 E의 음성메시지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D는 피고인 A로부터 "수원지점에 경장도 말을 쓰는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겁니다."라는 말을 듣고, E에게 "수원지점 서검사입니다. 수사 중에 아니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확인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참고인이 시장님께서 R으로부터 은갈치를 받았고 R과 골프를 쳤다고 진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인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E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는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은 가끔 카메라 쪽으로 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E의 답변 내용을 들으며 D에게 위 E에 대한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 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을 하였다.

5) D는 위 E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후 자신의 음성은 삭제하고 E의 음성만을

남기는 방법으로 편집한 녹음테이프를 만들었고, 위 녹음테이프를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D에게 위 녹음테이프를 건네주는 장면을 익명의 제보자가 위 녹음테이프를 D에게 제공하는 장면인 것처럼 촬영하였다. C는 2002. 5. 18.경 'M'을 방송하였는데, 2002. 5. 10.경의 E과의 통화 내용을 편집한 위 녹음테이프의 내용이 방영되었다.

6) 피고인 A은 2002. 5. 21.경 D로부터 위 녹음테이프를 다시 전달받았고, 같은 달 23. 09:30경 ##시청 내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녹취원문을 배부하며 위 녹음테이프 내용을 공개하였다.

7) E은 2002. 5. 25. 피고인 B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인 A과 D를 상대로 '피고인 A과 D는 6. 1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검사를 사칭하여 고소인(E)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고소인 측에 불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편집하여 공개하고, 기자회견 형식으로 또다시 공개하여 고소인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혔으므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8) D는 2002. 5. 31.경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1회 조사를 받았는데, "E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고, E의 녹음 테이프는 피고인 A이 입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였고, 같은 날 2, 3회 조사와 2002. 6. 1.경 4회 조사를 받을때까지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였다.

D는 2002. 6. 1.경 긴급체포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같은 달 3.경 구속되었는데, 같은 달 3.경에 이르러서야 "진술을 번복하겠다.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검찰 또는 서검사라고 사칭하여 E의 진술을 받았다."라고 검사사칭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252쪽). D는 이후 같은 달 25.경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9) 위 사건과 관련하여 D는 2002. 6. 17.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02.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하여 2003. 1. 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2003.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 9. 12. 선고 2002고단124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3. 1. 9. 선고 2002노3166 판결).

10) 피고인 A은 2002. 6. 28.경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1회 조사를 받았는데, "D의 검사사칭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에서 이미 본인에 대한 구속방침을 정해놓았다. 검사사칭 사건에 관한 내용이 조작되고 있다는 근거를 입수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313, 1316쪽). 피고인 A은 2002. 6. 28.경 체포되어 2002. 7. 1.경 구속되었는데, 2002. 7. 3.경 5회 조사를 받을때까지도 혐의를 부인하였다.

11)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02. 7. 4. 공무원자격사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다.

위 재판에서 피고인 A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부분과 관련하여 "2002. 6. 13. 지방선거가 임박한 E 시장은 피고인 A을 제재하고 싶었고, 수달 조작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C 측은 검사사칭에 관한 책임을 덜고 싶어 E 시장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D에 대한 고소허소를 약속받았으며, D 등 취재진에게 피고인 A의 가담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하였고, D 등 취재진이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원자격사칭 및 무고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A은 2002.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하여 2003.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4. 12. 24. 대법원에서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 11. 13. 선고 2002고합1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7. 1. 선고 2002노3184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065 판결).

12)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중 공무원자격사칭죄 부분의 범죄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시 수청구 U 소재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 N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바, C 'M' 프로그램에서 프로듀서로 재직하던 D는 2002. 5. 18. 22:00경 C에서 방영될 '○○ N - O지구 P 용도변경 및 특별분양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시장과 위 P 시행업체인 Q 주식회사 회장 R 등과의 유착의혹 및 이들의 배후를 취재함에 있어 2002. 5. 10. 10:59경 전 ##시장 E의 전 수행비서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이라고 자신측을 소개하고, 같은 날 11:26경 ##시청 시장 비서실에 전화하여 소속 직원인 T에게 자신측을 "검찰청 검사실"이라고 소개하며 각 E과의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D가 같은 날 11:28경 위 피고인의 법률사무소 내 집무실에서 취재 목적으로 C에서 제공받아 사용중인 핸드폰에 E으로부터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D로 하여금 E과 피고인간에 맞고소하여 수사 중인 업무상 배임 및 명예훼손 사건의 주임검사인 수원지방법검찰서도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마치 위 서검사가 E을 상대로 위 맞고소 사건에 관하여 전화로 그 의혹 및 배후관계 등에 조사하는 것처럼 하려고 E에 대한 질문사항을 사전에 D에게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통화중 그때 그때마다 메모지에 추가로 작성하여 보여주고, D는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메모지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여 그 답변을 얻어내고 카메라 담당 V, 오디오담당 W로 하여금 이를 녹취하게 하여 보도하기로 하고, D와 공동하여, D는 피고인에게 "수원지점에 경장도 말을 쓰는 검사 중 아는 사람 있어요"라고 물어 피고인이 "수원지점에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겁니다"라고 대답하자, D는

E에게 "수원지검 서검사입니다, 수사 중에 아니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확인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참고인이 시장님께서 R로부터 온갈치를 받았고 R과 골프를 쳤다고 진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인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마치 위 사건을 수사중인 서검사인 양 운을 댄 다음 E를 상대로 사칭하는 통화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가끔 카메라쪽으로 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E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D에게 위 E에 대한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 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하고, 이에 따라 위 D는 E에게 「OO N지구 용도변경은 누구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닌가, P의 R에게서 온갈치를 받고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R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닌가, 선거 때 R이 도와주었는가, 왜 ##시 부시장이 R의 골프클럽하우스의 사무실을 사용하였는가, R이 성남지청과 수원지검 검사들과 어울려 골프를 쳤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박도 비서관과 이모부장검사가 시장과 가깝게 지낸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작년에 김시장이 고소한 내용의 수사가 그 당시 왜 지연되었는가, 등에 관하여 마치 검사가 E를 상대로 피의자신문하듯이 유도 질문을 하며 그 답변을 얻어내는 등으로 조사하여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나. 2018년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초청토론회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기소

1) 2018년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초청토론회에서의 발언

피고인 A는 2018. 5. 2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C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2018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C 초청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A의 가담 여부에 대한 Y당 소속 Z 후보자의 질문에 "제가 한 게 아니고,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피디가 한 것을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 추가시간을 요청한 뒤 "P 특혜분양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P 특혜분양 사건을 제가 추적해서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당했지요, 어떤 도 방송에서 저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할 때 전화가 걸려 온 거예요 시장에 가서. 그래서 그분이 전화로 내가 어디 어디 검사인데 사실대로 얘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에 한 것을 걸어서 제가 도와준 걸로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라고 부연 발언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기소

가) 피고인 A는 2018. 5. 29.경 '2018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C 초청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A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 "피디(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도지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의 경력 내지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나) 위 재판에서 피고인 A는 '누명을 썼다'는 말을 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 A는 재판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는 표현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 A로서는 억울하다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은 의견에 불과하다', '당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하여 D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은, E는 피고인 A를 주범으로 몰아 구속시켜 시장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여야 했고, C는 수탈 사건 조작보도에 이어 검사사칭 사건으로 또다시 비난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A를 주도로 하여 책임을 축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바, 피고인 A로서

는 충분히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라고 변소하였다.

다.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증언 경위

1)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통화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변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E과 C 사이에 피고인 A를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E의 측근이었던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2018. 12. 22.경 약 12분 46초, 약 1분 48초 간 2회 통화를 하고, 같은 달 24.경 약 12분 16초 간 통화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12. 22.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2002년 당시 주장했던 내용 등이 담겨 있는 변문요지서를 제공하였다. 위 각 통화에 대한 녹취록은 별지 1, 2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B의 진술서 작성

가) 피고인 B는 2018. 12. 31.경 검사사칭 사건의 경과, C에서 E에게 고소를 취할 것을 부탁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진술서(이하 '진술서 초안'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3005쪽), 이를 L에게 발송하였다. 이후 L가 피고인 B에게 '월요일 1월 2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정본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라고 하자, 피고인 B는 '일단 보여드리고 더 보충하는게 나을듯합니다.. 의중을 추가했으니'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5365쪽).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18. 12. 22.자 및 같은 달 24.자 통화 과정에서 한 말을 진술서 초안에 수기로 메모하면서 진술서 초안을 수정하였고(이하 '수기메모 진술서'라고 한다), 2019. 1. 7.경 'E는 고소취하 문제를 피고인 B파도 상의하였다. 검

찰, ##시, C, 후보자캠프 등은 A 공대위위원장에게 소위 물가고 여론에서도 덮여 위는 듯한 분위기가 일어났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수정본(이하 '진술서 수정본'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L에게 발송하였으며(증거기록 3008쪽), L는 진술서 수정본을 받아본 후 피고인 B에게 '수고했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5365쪽).

다) 진술서 초안, 수기메모 진술서 및 진술서 수정본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3) 피고인 B과 변호사 G 사이의 통화 및 면담

가) 피고인 B는 2019. 1. 8. 14:12경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를 변호 하였던 법무법인 F앤파트너스의 변호사 G으로부터, 'A지사님 변호하는 G 변호사입니다 문자보시면 연락 한 번 주세요'라는 연락을 받고(증거기록 5367쪽), 같은 날 14:57경 변호사 G과 약 11분 1초 간 검사사칭 사건에 관한 통화를 하였다. 위 통화에 대한 녹취록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나) 변호사 G는 통화 후인 같은 날 15:32경 피고인 B에게 '증인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죠'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증거기록 5367쪽), 피고인 B는 2019. 1. 19.경 변호사 G의 사무실에 찾아가 변호사 G을 만나 변호사 G이 가)항 기재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 놓은 증인신문사함을 확인하였고, 2019. 1. 23.경 변호사 G으로부터 위 증인신문사함을 다시 전달받았다(증거기록 5359쪽).

4) 피고인 B의 증인 불출석 및 재출석

가) 피고인 B는 2019. 1. 24.경 피고인 A 측의 증인으로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예정일의 전날인 2019. 1. 23.경 AA에 'A, 검사사칭 또 법정에서 오든다'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위 기사에는 '재판에서 검찰 측은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반면 변호인 측은 검사사칭 당시 고 E 시장의 수행비서인 K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이 이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기사를 접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J에게 "오늘 AA에 사전정보 유출되어 난리입니다ㅠ.. 진실장게 보고드렸더니 애기 전해드리시구요, 내담과들 다르니 미확버리겠고 마니 힘이 드네요.. 변호사케도 상황 얘기해서 시기조절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증인신문 예정일인 2019. 1. 24.에도 L에게 "형님.. 심정 알겠지만, 너무 피롭네요 어떤 식으로든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참서 못할 거 같습니다.. 변호인쪽은 전략적으로 계속 요청하신다고.. 압권 대안을 계속 협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변호사 G에게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법원에 불출석 통보를 해야하는지,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리려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귀송합니다 ㅠ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365-5367쪽). 이에 L가 "어려울 알겠지만 제대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네, 수고"라고 답하고, 변호사 G는 "나가세요.. 어차피 저희는 계속 불러달라고 할거니까요.."라고 답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424쪽).

나) 피고인 B은 2019. 2. 1.경 J에게 "증인 출석은 지역 분위가 잘 정리해서 준비 중이니 넘 걱정마시구요..", 같은 달 14.경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라는 메시지를, 변호사 G에게 같은 달 13.경 "변호사님 잘 계셨는지요? 널 재판에 증인 출석예정인데 내용이 추가 및 변동사항 있는지요?"라는 메시지를 각 발송한 후, 같은 달 14.경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증거기록 647쪽).

5)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증언 내용

피고인 B의 증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인 B의 증언 이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과

1) 피고인 A 측의 의견서 제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은 당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피고인 A을 공무원 자격사칭의 주범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구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C 측과 E 사이에 'D 등이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몰아주면, D에 대한 고소를 취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고, D 등은 그에 따라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의심은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다."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였고(증거기록 687쪽),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B의 증언을 근거로 "C는 고소인 측과 모종의 합의를 끝내고 D에 대한 고소취소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87쪽).

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 5. 16.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부분 무죄 판결은 2020. 10. 24.경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노446 판결].

3) 그 밖의 사정

가) 피고인 B의 증언 후, J은 2019. 2. 14.경 피고인 B에게 "회의 중이라 전화못받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전실

장님하고 통화했습니다. 힘냅시다요. 부족한 부분 있었으면 잘 말씀드리구요.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대로 답변 잘 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증언 이후 2019. 7. 22.경부터 2022. 10. 20.경까지 피고인 A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모친상에 **도지사 근조기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B이 위증을 하였는지에 대한 주장

1) 피고인 B은 2023. 3. 22.경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1회 조사를 받으면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증언 당시, 자신이 기억한 대로 증언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경 피고인 A과의 통화 후 E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이었던 F앤파트너스의 변호사 C에게 검사사칭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이 위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으로 ① 피고인 B은 'E과 C 사이에 피고인 A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하여 D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D는 경쟁제를 약속받으면서 피고인 A이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관하여는 증언을 하지 않았고[이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하여 E 측과 C 사이에 이루어진 접촉의 내용을 구분하기 위하여, ② E 측과 C 사이의 D에 대한 고소 취소와 관련된 합의(약속, 합의, 상의 등)에 관한 부분은 각 '고소취소 합의(약속, 합의, 상의 등)'라 하고, ③ E 측과 C 사이의 피고인 A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을 몰거나 D 등 C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의 합의(약

속, 합의, 상의 등)에 관한 부분은 각 '주범으로 모는 합의(약속, 합의, 상의 등)'라고 한다]. ② 피고인 A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E 선거캠프 분위기에 관한 증언 및 E이 피고인 B에게 'D에 대한 고소를 취하려면 A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고 하였다는 증언의 경우, 피고인 B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아니니고, ③ E과 C 관계자가 합의 중이라는 증언의 경우, 이는 2002년 당시 D의 진술 등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통화 과정에서 'E 측의) 누군가가 (C와) 연결되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이 위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④ E이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증언의 경우, 당시 피고인 B은 실제로 D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B에게 위증을 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지에 대한 주장

1) E과 C 사이의 고소취소 합의(약속)는 2002년 당시 검사사칭 사건의 재판에서의 D의 증언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인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하여 알고자 하였던 것은 고소취소 합의의 정치적 배경과 구체적 경위, 그 이유로, 피고인 A에게 필요했던 피고인 B의 증언은 'C가 E로부터 고소취소 합의(약속)를 받고 그 대가로 D 등이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알고 있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있는 대로 말해달라. 기억을 되살려 달라. 재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등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범으로 모는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

3) ① 피고인 B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증언 당시 'E의 성품상 C와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인 A을 검사사칭의 주범으로 모는 혐의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여 E과 C 사이의 피고인 A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혐의에 관하여는 증언을 하지 않았고, ② 피고인 A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E의 선거캠프 분위기에 관한 증언 및 E이 피고인 B에게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A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고 하였다는 증언의 경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증언을 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③ E과 C 관계자가 혐의 중이라는 증언의 경우, 이는 2002년 당시 D의 진술로 이미 확인된 부분으로, 피고인 A이 필요로 하는 증언도 아니며, ④ D에 대한 고소취소 증언의 경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E이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말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주장

피고인 A에게는 E, C, 검찰, D 사이에 피고인 A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합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다수 있었고, E의 핵심 측근으로서 검사사칭 사건에 관한 고소대리를 했었던 피고인 B은 이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 B이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을 요청하였을 뿐인바, 피고인 A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

2) 피고인 B은 제1 내지 6증언은 모두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증 범행임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각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는 피고인 A의 위증교사 범행의 성립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고, 피고인 B과 관련하여서도 위증 범행의 성립여부와 관련된 법리적인 판단 및 자백의 신빙성과 관련된 판단은 피고인 B의 지백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B의 각 증언이 위증인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제2증언에 관하여

1) 제2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A 측 변호인의 "이러한 상황에서 E의 선거캠프 내에서는 'C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지 않고, 피고인(A)을 공무원자 검사칭의 주범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구속되게 하여야 한다, 강하게 가자.'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이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이다.

2) 피고인 A은 1999년경부터 N·O지구 용도변경 저지운동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서 N·O지구의 용도변경 저지운동을 하였고, 시장퇴진운동도 하는 등 ##시장이었던 E에 반대되는 활동을 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 A과 공동대책위원회는 2001년경에는 E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E도 피고인 A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과 E은 검사사칭 사건 이전부터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3)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E의 수행비서로서 정부 역할을 담당하였다. E 선거캠프 회의에 간혹 참석한 적이 있다. 검사사칭 사건의 대응방향에 관한 회의 결과를 E으로부터 전달받았다. E의 의중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다. E 시장과 선거캠프가 피고인 A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분위기는 맞다. E 시장 측은 피고인 A을 고소하여 구속되기를 바랄 정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고(증인 B에 대한 2024.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3, 11-13, 15, 17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4, 5, 6증언은 피고인 B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2, 3증언의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에서의 증언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의 기억 또는 인식에 따라 진술한 것이거나 주관적 평가나 의견, 느낌 내지 인상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증언이 피고인 B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관련 법리

1)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등 참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등 참조).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등 참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측), "검사사칭 사건 당시 선거캠프에서도 피고인 A이 부정한 의도를 갖고 조작한 것이라고 돌아가는 분위기도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E에 반대되는 활동을 하고 퇴진운동까지 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이 타겟이 되었던 것도 맞다.", "혐의나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위기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다.", "증인이 알고 있는 선거캠프의 분위기도 'C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좋지 않으니, 피고인 A을 확실하게 구속되게 강하게 가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다'는 것이다.", "캠프의 분위기에 관해서는 실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다."라고 수차례 반복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2024.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37, 53, 55, 88쪽), 검사사칭 사건 당시에도 E 선거캠프에서는 실제로 피고인 A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 A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인 B은, 2018. 12. 22.자 통화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모두가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거예요.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라고 하자, '그때 뭐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에요'라고 답하는 등 선거캠프의 분위기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먼저 언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위 부분 통화는 당시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알고 이야기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증언과 같은 '분위기'와 관련한 피고인 B의 증언은 자신의 기억과 일치한 증언으로 보인다.

5) 이 부분 증언은 단순히 E 측 선거캠프의 분위기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B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기억하거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E 측과 C 사이의 고소취소 혐의나 주범으로 모는 혐의' 등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6) 나아가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언급한 '당시 분위기'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 B

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거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 B의 평가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증언은 피고인 B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제3증언에 관하여

1) 제3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A 측 변호인의 "이후 E은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이 "예"라고 증언한 것이다.

2) D는 검사사청 사건의 재판 및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은 검사사청 사건에서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부분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는 반하는 증언이기는 하다.

3) 그러나, 통상 증인신문과정에서는 증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실(개인적·경험적 사실)에 관한 신문뿐만 아니라 증인이 개인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학습이나 자료, 전언 등을 통해 알거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객관적·일반적 사실)에 관한 신문이나 증인의 의견이나 생각, 평가 등 가치판단(가치판단)에 관한 신문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부분 증언은 증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이 아니라 객관적·일반적 사실에 관한 증언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판례의 법리와 같이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A이 'E 시장과 C 측이 고소취소 협의

를 했다. 한 쪽을 취하고 한 쪽으로 몰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A이 제공한 변론요지서의 내용을 본 후 D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었다고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반복하여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2, 13, 42쪽), 피고인 A과의 통화 후 E 선거캠프의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D에 대한 고소취소가 언제 있었는지를 묻고, 변호사 G과 통화하면서 'C에 대한 고소취하는 지방선거 전이 아니었었나 판단된다'고 먼저 말하기도 한 점, 검사사청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주 업무는 E의 선거캠프 관리였는바, 검사사청 사건을 담당하지 않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B으로서 피고인 A에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있고, E으로부터 C에 대한 대응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D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증언 당시에는 E이 실제로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인식하여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증언 또한 피고인 B의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제1, 4, 5, 6증언에 관하여

1) 이 부분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B이, ① 피고인 A 측 변호인의 "그러던 중 E은 증인에게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A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C 측 고위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으나."라는 질문에,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제1증언), ② 피고인 A 측 변호인의 "당시 E이 'C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증인에게 직접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제4증언), ③ 재판장의 "증인이 알기로, E과 C 측 사이에 'D는 취하고 A 쪽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D와 피고인(A)

의 구속 전에 있었다는 것인가요. E이 두 사람을 고소한 시점, D가 구속된 시점, 그리고 피고인(A)이 구속된 시점을 구분한다면, 어느 시점에 E과 C 측 사이에 협의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협의는 피고인(A)이 구속되기 전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재차 "그렇다면 D의 구속 후 피고인(A)의 구속 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말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제5증언), ④ 검사의 "증인은 'C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것을 E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무엇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선거 전에 C를 상대로 한 이 일이 언론에 불거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실익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협의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D나 피고인(A)에 대한 고소취소의 협의였나요, 아니면 C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에 대한 협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C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하느냐에 대한 협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는 것이다(제6증언).

2) 이 부분 증언들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검사사청 사건에 대한 C와의 구체적 협의에 관한 어떠한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한 것에 해당한다.

3) 그런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증언들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E 시장 등으로부터 검사사청 사건과 관련하여 C 측과 협의 중이라거나, C 고위관계자와 접촉 중이라는 등의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E 시장으로부터 'A을 고립시키기 위해 C 측 고위관계자와 D에 대한 고소 취소를 협의 중이다'라는 등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수차례 반복하여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1, 12, 21, 26, 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4, 5, 6증언은 피고인 B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으로 판단된다.

4)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E을 아침저녁에 한두번은 만났고, E로부터 C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선거를 앞두고 C 방송에 나와 머리가 아프다는 등 C에 관한 이야기는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2024.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73-76, 116쪽), S도 "E이 피고인 B을 만나거나 하루에 1번 정도 통화를 하였는데, C에 관하여는 고소고발한 것 정도는 보고를 했을 것이다. M 방송에 대하여 E 측의 대처는 피고인 B이 있는 정무라인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무라인에서 선거에 불리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18, 23쪽),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C와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실제로 듣기도 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E과 C 측의 협의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증언은 그 취지가 객관적 사실이나 당시 정황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마치 검사사청 사건에 대한 C와의 구체적 협의에 관한 어떠한 내용을 E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것처럼 증언한 것으로써 객관적 사실 자체에 관한 증언과는 그 의미가 달라지고, 증거로서의 가치, 증언의 신빙성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증언을 'E과 C 사이의 협의'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단순히 과장하여 증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2018. 12. 22.자 및 같은 달 24.자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피고인

B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G과 통화를 한 후에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제1 내지 6증언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보더라도 위 각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 관련 법리

1)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한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10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2)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3) 교사범의 고의와 관련하여, 교사범에게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려

는 고의(교사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고의(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4) 어떠한 의사 표현이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로써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없지 않으므로 특정 의사 표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전체로서 문제된 표현의 의미가 합리적으로 파악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참조).

나. 판단의 순서

1)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것처럼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 교사자의 교사행위, 교사자의 교사의 고의, 교사자의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사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여 교사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범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먼저 특정하고, 이에 대한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교사자에게 교사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합한 판단순서라고 보인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 내용의 의미와 피고인 B이 공격선 거법위반 사건에서 증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증을 요청한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으므로, 아래에서는 주된 쟁점과

관련한 판단의 편의를 위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 측 행위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① 2018. 12. 22.자 및 같은 달 24.자 각 통화 행위 및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주관적 범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위 행위가 위증을 요청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여부 포함), ② 진술서 작성, 피고인 B와 변호사 G 사이의 통화 및 증인신문사항의 작성 행위를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위 행위가 위증을 요청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여부 포함) 등을 먼저 판단하고, 그 이후 ③ 피고인 B의 개별 위증행위에 대한 피고인 A의 교사행위의 성립 여부, 교사의 고의, 정범의 고의를 차례로 판단한다.

다. 2018. 12. 22.자 및 같은 달 24.자 각 통화 행위 및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8. 12. 22.자 및 같은 달 24.자 통화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하였거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1) 위 각 통화에서의 주요 발언 및 대화의 흐름, 표현의 의미, 전체적인 취지 등

가) 2018. 12. 22.자 통화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이유³⁾와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이나 피고인 A이 인식·추정하거나 의심하는 사항이나 정황 등을 설명하고,⁴⁾ 피고인 A이 어떤 사항에 대하여 증언이 필요한지⁵⁾ 등에 관하여 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발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부정하거

나 부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설명을 청취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통화를 마무리하면서 피고인 A은 '검사사청 사건에서 피고인 A 측 주장이 담긴 변론요지서 등을 보낼 테니 기억을 되살려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⁶⁾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그걸 보고 기억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며 통화를 마친다. 이후 같은 날 이어진 통화에서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안 본 거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E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상기해 봐주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⁷⁾

나) 피고인 B이 변론요지서를 열람한 이후인 2018. 12. 24.자 통화의 경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기존에 설명한 내용과 변론요지서 내용을 기초로 하여⁸⁾ 좀 더 구체적으로 사건의 내용을 언급하고⁹⁾ 피고인 A의 주장이나 추측을 설명하였으며,¹⁰⁾ 제차 피고인 A이 필요로 하는 증언 사항을 언급하거나 설명하면서¹¹⁾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기억 또는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¹²⁾

다) 2018. 12. 24.자 통화의 주요 부분 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검사사청 사건에서 D 등 C 직원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대화하다가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제가 그때 뭐 들은 얘기. 뭐, D PD한테는 고소 취하해 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¹³⁾라고 말하며 "음... 그... 그, 기억하세요, 혹시?"라고 물었는데, 피고인 B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고소취하 해준다고,"¹⁴⁾라고 말하며 고소취소나 고소취소 약속 등에 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2018. 12. 22.자 녹취서(1) 1쪽 1-20행

4) 2018. 12. 22.자 녹취서(1) 2쪽 1행-4쪽 12행, 5쪽 23행-6쪽 15행, 6쪽 24행-8쪽 19행 등

5) 2018. 12. 22.자 녹취서(1) 4쪽 16-18행, 6쪽 17-20행, 9쪽 1-17행 등

6) 2018. 12. 22.자 녹취서(1) 9쪽 21행-10쪽 8행

7) 2018. 12. 22.자 녹취서(2) 2쪽 7-25행

8) 2018. 12. 24.자 녹취서 1쪽 8-19행, 6쪽 23행, 9쪽 1-22행, 10쪽 22-23행 등

9) 2018. 12. 24.자 녹취서 1쪽 22행-3쪽 9행, 4쪽 2-7행, 6쪽 24행-8쪽 13행 등

10) 2018. 12. 24.자 녹취서 4쪽 9행-6쪽 1행, 9쪽 10-23행, 12쪽 10행-13쪽 8행 등

11) 2018. 12. 24.자 녹취서 6쪽 3-18행, 9쪽 25행-10쪽 9행, 12쪽 1-8행, 15쪽 8-13행

12) 2018. 12. 24.자 녹취서 1쪽 25행-2쪽 1행, 3쪽 14-16행, 3쪽 20-25행, 7쪽 2-9행, 8쪽 15-21행

13) 2018. 12. 24.자 녹취서 3쪽 20-23행

14) 2018. 12. 24.자 녹취서 3쪽 25행-4쪽 1행

이에, 피고인 A은 "음... C 측하고 뭐 협의도 좀 하고, 예 C하고 상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음, 그건 뭐 사실일 테고, 구체적으로 얘기된 지는 모르겠지만."¹⁵⁾이라고 말하여, E 측과 C 측 사이의 협의·상의·접촉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피고인 B의 기억 또는 인식 여부를 묻거나 이를 확인하려는 취지 혹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동조를 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채 "예, 예, 예" 및 "네"¹⁶⁾라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C 측의 이해관계, ##시(E 측)의 이해관계, 검찰의 이해관계, D 등 C 직원들의 이해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모두가 나를 잡아넣은 데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의 얘기가 오간 걸로. 실제로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¹⁷⁾라고 말하며, 위 협의의 내용이나 취지가 '피고인 A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그래서 그런 쪽의 증언이 좀 있으면, 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알 필요가 없고."¹⁸⁾라고 말하고, "예, 뭐 십수 년 지난 일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그때 당시에 C 측하고 ##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예...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¹⁹⁾라고 말하여 검사사칭 사건에서 E 측과 C 사이에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와 관련된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다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검사사칭 사건에서 D가 검찰청이라고 칭하며 ##시청이나 ##시 직원들에게 전화하였던 사실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이어 피고인 A은 "음... 하여튼 공격 타겟은, 목표는 나였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서 예... C 측하고 여러 차례

15) 2018. 12. 24.자 녹취서 3쪽 2-7행
16) 2018. 12. 24.자 녹취서 3쪽 3, 5, 8행
17) 2018. 12. 24.자 녹취서 6쪽 3-7행
18) 2018. 12. 24.자 녹취서 6쪽 9, 10행
19) 2018. 12. 24.자 녹취서 6쪽 12-18행

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나와서, 그니까 내부에서 누가 C랑 연결됐는지는 모르는데.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순 있을 거예요."²⁵⁾라고 말하고, 이어 "그러나 뭐 그건 당시 직을,"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²⁶⁾라고 말하자, 다시 피고인 B은 "예, 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표를 낼 상황 아니니까."²⁷⁾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당시 S이 E 시장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 A은 "아... 일단은 어,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가 전해들은 이야기. 예... 뭐 직접은 아니지만. 음...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²⁸⁾라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④ 「당시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들은 이야기」 및 ⑤ 「당시의 상황」에 대한 내용에 관한 증언을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과에 대해 대화한 후, 다시 피고인 A은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²⁹⁾라고 말하고, S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대화를 마무리 하면서, 피고인 A은 "그래요. 어... B 비서관님, 그거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뭐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뭐,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예... 어쨌든 A을 걸어 놓아야 될 입장이었다."³⁰⁾라고 말하여, 피고인 B에게 ⑥ 「그때 당시 분위기가 피고인 A을 걸어 놓아야 될 입장이었다」는 내용에 관하여 증언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하시면서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

협의를 했던 건 분명하고, 다만 그 내용이 고소취소였는지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실제로 C하고 전화한 사람 누구예요? 뭐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고."²⁰⁾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글쎄, 그 내용까지는 누군가가 연결이 됐을 거 같은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고요."²¹⁾라고 대답하여 E 측과 C 사이의 협의나 접촉을 담당한 E 측 인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B은 "지금 그... 지사님 변론, 그 당시를 보면. 어.. 아무튼 뭐 선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었고, 예, 해명이 됐어야 될 이제 상황이 필요했던 거죠. 아무래도. 그 분위기를 잘 쓰셨더라고요."²²⁾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들은 이야기, D가 고소취소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 D의 석방과 구형이 늦어진 사정 등을 이야기한 후, "어쨌든 핵심은 B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C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²³⁾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이 "교감이 있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 그래서 좀 그, 서로 협의."²⁴⁾라고 말하여, 피고인 B에게 ① 「E 측과 C 측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다」는 내용, ② 「E 측과 C 측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는 내용, ③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 서로의 협의」 등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그때는 이제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

20) 2018. 12. 24.자 녹취서 8쪽 15-21행
21) 2018. 12. 24.자 녹취서 8쪽 22-24행
22) 2018. 12. 24.자 녹취서 9쪽 1-9행
23) 2018. 12. 24.자 녹취서 9쪽 25행-10쪽 2행
24) 2018. 12. 24.자 녹취서 10쪽 4-7행

서."라고 말하며 통화를 마쳤다.

2) 위 각 통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각 통화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통화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나,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위 각 통화의 내용이 통상적인 증언요청의 경우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점

(1) 앞서 본 통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증언을 요청하는 이유와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 및 자신이 인지·추정하거나 의심하는 사항이나 정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어떤 사항에 대하여 증언이 필요한지 등에 관하여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이 기억하거나 인지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도 확인한 후 이에 맞추어 피고인 B에게 필요한 증언을 부탁하고 있다.

(2) 일반적인 사안에서 증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사건의 내용과 요청자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설명이나 자료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한 확인,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증언요청 등의 과정이나 대화가 수반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이는바, 앞서 본 통화의 내용에 나타난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 표현의 의미와 문맥, 대화의 전반적인 흐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통화의 내용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25) 2018. 12. 24.자 녹취서 10쪽 8-18행
26) 2018. 12. 24.자 녹취서 10쪽 19행
27) 2018. 12. 24.자 녹취서 10쪽 20행
28) 2018. 12. 24.자 녹취서 12쪽 1-8행
29) 2018. 12. 24.자 녹취서 14쪽 10-11행
30) 2018. 12. 24.자 녹취서 15쪽 8-13행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이 모른다고 하거나 모를 것 같은 내용에 관하여는 증언 요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한 증언만 요청하였으며, 명시적으로 거짓 진술(위증)을 요청하지도 않은 점

(1) 앞서 본 통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통화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검사사칭 사건 당시에 E 측과 C 측 사이에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 등과 관련된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한 설명을 반복하기는 하였다.

(2) 그런데 2018. 12. 24.자 통화에서 피고인 B이 '고소취하 해준다는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음... C하고 뭐 합의도 줌하고, C하고 상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³¹⁾라고 하며 E 측과 C 사이의 합의·상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피고인 B의 기억 또는 인식 여부를 묻거나 확인하는 취지 혹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동조를 구하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예, 예, 예"라고 답변하자, 피고인 A은 다시 그 합의의 내용이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쪽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겠지만 당시 C 측하고 ##시 측하고 그런 식의 합의나 논의가 많았다,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서 "C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던 건 분명하고, 다만 그 내용이 고소취소했는지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모른다고 할 수 밖에 없겠조."³²⁾라고도 말하였다.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모

31) 2018. 12. 24.자 녹취서 4쪽 2-4행
32) 2018. 12. 24.자 녹취서 8쪽 17-19행

른다고 하거나 모를 것 같은 내용(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약속이나 E 측과 C 측 사이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고, 피고인 B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혹은 적어도 피고인 B이 명백히 부정하지 아니하는 사항(E 측과 C 측 사이에 합의·상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만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면서, 피고인 B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사항인 ① 'E 측과 C 측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다'는 내용, ② 'E 측과 C 측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는 내용, ③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 서로의 합의' 등의 내용에 관하여만 증언을 요청을 하였을 뿐, 피고인 B이 모른다고 한 내용(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약속이나 E 측과 C 측 사이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증언 요청을 하지 않았다.

(3) 이후 피고인 B이 'C 측과 합의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은 선거준비를 위해 먼저 나와 있었기 때문에 E 측에서 누가 C와 연결되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은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가 전해들은 이야기, 뭐 직접 접은 아니지만,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김 비서관님 그거 좀 꼭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뭐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뭐,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어쨌든 A을 걸어 놓아야 될 입장이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B이 말한 위와 같은 사실까지 감안하여 ④ '당시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들은 이야기', 나 ⑤ '당시의 상황', ⑥ '그때 당시 분위기가 피고인 A을 걸어 놓아야 될 입장이었다'는 내용만이라도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대화를 마쳤는 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부인하는 사실(E을 수행하면서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였다는 취지)에 관한 증언을 요청을 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B이 답변한 피고

인 B의 개인적 상황까지 고려하여 피고인 B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증언만을 요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A은 최종적으로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피고인 B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피고인 B이 명백히 부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모른다고 하거나 모를 것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증언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명시적으로 거짓 사실을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도 찾아 볼 수 없다.

(5)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 만한 사실이 있었다'는 변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E 측과 C 측 사이의 피고인 A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E의 측근이었던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증을 요구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 B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있는 대로 증언하여 달라'고도 말하고, 검사사칭 사건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관하여 묻기도 한 점

(1) 피고인 A은 2018. 12. 22.자 피고인 B과의 통화를 처음 시작하면서, '세월도 지나버렸으니, 진짜 있는 대로 이야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증명은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후의 통화 과정에서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을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면 도움이 된다. 한 번 생각을 되살려봐 달라. 안 본 거 그런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E 측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한 번 상기해 봐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12. 24.자 통화에서는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에게 'E 측과 C 측 사이의 고소취소 약속에 관하여 아는지?'를 묻기도 하고, 'E 측과 C 측 사이의 협의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기도 하는 등 당시 사정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피고인 B의 기억을 묻기도 하였다.

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한 증언은 피고인 B이 알거나 알 수 있는 만한 사항이거나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되는 사항들인 점

(1) 앞서 본 것처럼 위 각 통화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명시적으로 증언 요청한 사항은, 2018. 12. 24.자 통화에서 피고인 B이 '고소취소 약속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이후에 요청한 ① 'E 측과 C 측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다'는 내용, ② 'E 측과 C 측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는 내용, ③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 서로의 합의' 등의 내용과 피고인 B이 'C 측과 합의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은 선거준비를 위해 먼저 나와 있었기 때문에 E 측에서 누가 C와 연결되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이후에 요청한 ④ '당시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들은 이야기', ⑤ '당시의 상황', ⑥ '그때 당시 분위기가 피고인 A을 걸어 놓아야 될 입장이었다'는 내용 등이다.

(2) 위 증언요청 사항 중 ①, ②, ③의 취지는 '그 협의의 내용이 무엇인지(모르지만) E 측과 C 측이 검사사청 사건으로 여러 차례 협의·접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E 측과 C 측 사이의 협의·접촉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이 '고소 취하 해준다는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음... C하고 뭐 협의도 좀하고, C하고 상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라며 E 측과 C 측 사이의 협의·상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피고인 B의 기억 또는 인식 여부를 묻거나 확인하는 취지 혹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동조를 구하는 취지로 묻었는데, 피고인 B이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예, 예, 예' 라고 답변하는 등 E 측과 C 측 사이에 협의·상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동조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 D는 2002년 당시 검사사청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당국장과 담당부장이 면회를 와서 처벌을 완화하려고 하면 시장의 소취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래서 소취하를 얻기 위해 회사가 노력을 했고 제가 듣기로는 시장이 약속을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여 E 측으로부터 고소취소 약속을 받았다는 취지, 적어도 고소취소를 위하여 C 측에서 노력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92쪽), C 기획제작국의 국장이었던 AB는 이 법정에서 "##사라든지 출입하는 기자들이 보도본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 기자들을 통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또 어떻게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달라고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 우리 제작본부장은 보도본부장에게, 저는 보도국장에게 부탁을 했다. 그리고 아마 기자가 그쪽에 보도본부에 보고한 그 내용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도본부장인지 보도국장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보도국 쪽에서 '선거 끝나고 보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면회 가서 D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해주었다.", "부하직원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선처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피해자로 되어 있는 E 시장의 선처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증인이 직접 AC당 쪽 사람이라든지 E 시장 선거캠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백방으로 기자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쪽을 알아봤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17쪽), 기획제작국의 담당부장(CP)이었던 AD 또한 이 법정에서 "◎PD 구속 상태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이 나오고 봐야 하니까 그게 다 관심사였고 그런 관심사였기 때문에 아침에 회의 자리에서도 ◎PD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담당국장이 '내가 E 측에 접촉을 해보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걸 듣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C 측은 실제로 D에 대한 고소취하를 받기 위해 E 측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증언요청 사항은 피고인 B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만한 사항이거나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보인다.

(3) 위 증언요청 사항 중 ④, ⑤, ⑥의 취지는 '당시 E 측과 E 선거캠프의 피고인 A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 선거캠프 분위기의 경우, 2018. 12. 22. 통화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정황에 대해 설명하자 피고인 B는 '그때 뭐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라고 답변하였는바, 선거캠프의 분위기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먼저 이야기한 내용인 점, 피고인 A은 N·O지구 용도변경 저지운동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시장이었던 E에 반대되는 활동을 하여 왔고, 2001년경에는 피고인 A과 E은 각자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과 E은 검사사청 사건 이전부터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검

사사청 사건 당시 선거캠프에서도 피고인 A이 부정한 의도를 갖고 조작한 것이라고 몰아가는 분위기도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E에 반대되는 활동을 하고 퇴진운동까지 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이 타겟이 되었던 것도 맞다.", "증인이 알고 있는 선거캠프의 분위기도 'C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좋지 않으니, 피고인 A을 확실하게 구속되게 강하게 가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2024.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37, 5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증언요청 사항은 피고인 B이 기억하거나 알았던 사항이거나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보인다.

3) 본인의 주장을 반복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검사사청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반복 설명하였고, 피고인 A의 주장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였던 피고인 A이 E의 핵심측근으로서 검사사청 사건의 고소대리까지 한 피고인 B에게 검사사청 사건 당시 자신이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문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 B의 기억을 묻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변론요지서를 제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보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단거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증거의 탐색·수집 및 방어권 행사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위 통화가 이루어

진 2018. 12.경에 검사사청 사건이 있었던 2002. 5.경으로부터 약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경과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구체적인 기억을 상세히 묻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 A의 주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위증)을 요구하였거나,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특히 피고인 A이 주로 설명하였던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협의'와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통화 초기에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협의'에 관한 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하자 최종적으로는 'E 측과 C 측이 검사사청 사건으로 여러 차례 협의·접촉하였다'는 사항 및 'E 선거캠프의 분위기'에 관한 진술 정도만을 요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협의' 등 위 협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증언을 하도록 결의시키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진술서 작성, 변호사 G과의 통화·면담 및 증인신문사항의 작성 행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B이 작성한 진술서 및 변호사 G과의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각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말한 내용이나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거나(33) 변호사 G과의 통화 과정에

33) 피고인 B은 진술서 초안에 'C에서는 수탈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는데, 검사사청 사건이 밝혀질 경우 도덕성 문제로 매우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분위기였다.', 'A 변호사가 고소취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변피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 기억남는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서 수정본에 'A 변호사도 구속된 지 3일 만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18. 12. 22.경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수탈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5461쪽), 2018. 12. 24.경 피고인 A이 D를 미하면서 '당시에 고소 취소해주시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고 신경질 내고'라고 한 말을 오해하여 진술서 초안에 'A 변호사가 불만을 토로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5483쪽), 피고인 A은 실제로는 2002. 7.

서 언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G과 통화·면담을 한 후에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증언과 관련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진술서 작성 및 변호사 G과의 통화·면담이 피고인 A 측이 피고인 B에게 위증을 요청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아지도 않는다.

1) 위 각 행위에 피고인 A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가) 피고인 A과의 위 각 통화 이후, 피고인 B이 진술서 초안 및 수정본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진술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2024. 2.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82쪽, 증거기록 4627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각 통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통화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서 초안 및 수정본 작성 과정에서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비서인 L와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바, L가 진술서 초안 및 수정본을 피고인 A에게 실제로 보고하여 피고인 A이 진술서 초안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가 강조된 수정본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는 등 피고인 A이 진술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³⁴⁾ 나아가 피고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7일간 구속되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통화 과정에서 '3일 만에 석방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진술서 수정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서 초안과 수정본은 피고인 A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4) 피고인 B은 L가 '도움이 되게 진술서가 작성됐으면 좋겠다'고 하여 진술서 수정본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인 B에 대한 2024.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95쪽), 피고인 B과 L 사이의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2018. 12. 31.경 진술서 초안을 보내면서, '다시 일부 수정 중이다'라고도 하였는바, 피고인 B의 진술서 수정본 작성은 L의 요청과도 무관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증인신문이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 A이 증인신문사항 작성에 개입하였고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면, 위와 같은 질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피고인 A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수정 요청 등 추가적인 개입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이 증인신문사항 작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보인다).

2) 피고인 B은 스스로 파악한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G과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 피고인 B이 작성한 진술서 초안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통화 과정에서 알지 못한다고 하였던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이후 피고인 B은 진술서에 피고인 A이 통화 과정에서 언급하였던 'A이가 시킨 것으로 하면 고소취하하자. 내가 인터뷰하면서 검사사칭하라고 했다. ◎피디 거짓말한 이유는 고소 취하 약속'이라는 내용, 즉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내용을 수기로 메모하기도 하였음에도, 진술서 수정본에는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은 변호사 G과의 통화에서도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변호사 G은 피고인 B에게 '요청이 오면 취하해주는 대신 A을 좀 주범으로 몰자. 그런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나', 'C 사람들이 이제 A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고 가려는 진술을 했다. 그게 사실과 다름에도', '우리가 고소취하해주는 대신 뭐 C도 그쪽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고 묻는 등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 내지 합의를 아는지에 관하여 수차례 물었는데, 피고인 B은 이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인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L가 '지사님(피고인 A)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거론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술서의 작성과 수정에 관해서 피고인 A과 대화하거나 소통한 바 없고, L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 A이 거론했 바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2024. 2.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85쪽, 2024.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95쪽),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작성방향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사 G 사이에 2019. 1. 8.경 이루어진 통화의 경우, 피고인 B이 변호사 G에게 'E 측과 C 측 사이의 혐의 및 교감', 'E 선거캠프 내 분위기'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변호사 G은 피고인 B의 설명을 들으면서 추가적인 사항을 문의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바, 위 통화는 변호사 G이 검사사칭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G은 피고인 B과의 통화를 통하여 피고인 B이 검사사칭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였고, 2019. 1. 19.경 피고인 B을 만나 증인신문사항을 제공하면서 면담을 하였는데, 증인신문 역시 위 증인신문사항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변호사 G과의 통화, 증인신문사항의 작성 및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 A은 위 통화 및 증인신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작성방향 등에 관하여도 어떠한 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변호사 G이 작성한 증인신문사항 중에는 '이후 E은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지요, 언제 취하하였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언급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며, 증언 과

담변하였고,³⁵⁾ 변호사 G은 이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혐의 내지 합의에 관한 진술을 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B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G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과의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언급하지 않았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들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이는 C를 상대로 한 고소를 지속할 것인지에 관하여 E이 직접 언급한 내용, E과 피고인 B 사이에 상의된 내용 및 그 시기, C의 요청사항이나 태도 등과 관련한 진술로, 피고인 A으로서의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진술서 수정본 중]	
거대 방송 매체인 C와 소송이 장기화되면 선거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서 후보자는 고소취하문제를 저하하고 상의했습니다. C는 약속대로 빨리 고소취하 해주지도 않고, A이 구속전이라고 수사도 더디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9. 1. 8. 통화 중]	
C를 고소했지만, 선거가 직면했기 때문에 C를 상대해가지고 정말 실익이 있을 것이나, 굉장히 후보 입장에서 고민이 될 때였습니다. 그때 시장님하고 제가 저녁에, 아침에, 미팅을 하나씩 그때 저한테 슬쩍 슬쩍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A 지사 문제하고 C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 혐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C를 고소취하하는게 낫겠느냐 안 낫겠느냐, C측에서 그런 요청이 오는 것 같더라고 말씀을 하신거죠. 주범으로 몰자라고까지는 표현을 안 했던 거 같고요. A 변호사가 곤란할 거 아니냐. 움직이기 둔화될 거 아니냐는 취지로는 얘기를 했죠. 누가 연결했는지는 모르지만, 후보님이 C의 고위직과 교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35) 피고인 B은 통화 중 '이제 그런 게 생각에는 이제 A 지사가 소위 뒤 시켰다거나, 그 사정에 대한 것을 도움을 줬다거나 이런 걸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지, 다른 어떤 보상을.'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발언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는 변호사 G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 B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들이었습니다. 시장님한테 들었고, 그 당시에 저의 캠프 관계자 정책팀에 있었, 누군지를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거에 영향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C를 좀 원할하게 풀어주고, A 저사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D에 대한 고소취하를 해 주면) A 변호사가 더 곤란해질 것 같다는 식으로 C 측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요.
일정상 으로 보면 고소취하는 지방선거 전이 아니었겠나 판단이 됩니다.

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진술서나 변호사 G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들은 피고인 B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거나,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 E 측의 전반적인 입장이나 분위기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들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정보의 취득 경위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B은 스스로 파악하기에 사실이 아닌 것 같은 부분 또는 객관적인 정황에 어긋나는 것 같아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스스로 파악하거나 지득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진술서 초안 및 수정본을 작성하고, 변호사 G과 통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변호사 G은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 A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 만한 내용들이 피고인 B의 진술에 포함되어 있기에 피고인 B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 G이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변호사 G이 작성한 증인신문사항은 피고인 B이 스스로 밝힌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점

가) 피고인 B은 2019. 1. 19.경 변호사 G을 만나 면담을 하면서 증인신문사항을 제공받았는데, 위 증인신문사항은 피고인 B과 변호사 G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³⁶⁾ 다만 피고인 B이 진술서에 작성하거나 변호사 G과의 통화 과정에서 말한 내용 중에서도 피고인 B이 정말로 알 수 없는 내용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예를 들어, 피고인 B이 작성한 진술서 수정본에는 '당시의 검찰, ##시, C, 후보자캠프 등은 A 공대위원장에게 소위 물가고 여론에서도 떨어뜨리는 듯한 분위기가 일어났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신문사항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E의 선거캠프 내에서는 'C를 몰고 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지 않고, 피고인 A을 공무원자격사칭의 주범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구속되게 하여야 한다, 강하게 가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지요."라는 E 선거캠프 내 분위기에 관한 질문만이 기재되어 있고, 검찰, C의 분위기에 관한 질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한편, 증인신문사항 중에 '[E이 C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인 내용은 'D에 대한 고소취하하는 대신, 피고인 A을 검사사칭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나요"라는 질문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을 증인신문사항에 기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이를 긍정하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미리 협의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변호사 G이 피고인 B에게 위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재된 질문 사항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증인신문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변호사 G에게 '틀린 것이 없이 맞느냐. 질문사항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 맞느냐'고 물어봤고, '맞다'라는 대답

36) 증인신문사항 중 'E이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 B이 통화과정에서 이를 변호사 G에게 언급하였기에 증인신문사항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2024.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49쪽), 설령 위 피고인 B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피고인 B의 개별 위증행위에 대한 피고인 A의 위증교사 성립여부

앞서 본 사정들과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제1 내지 6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위증교사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제2, 3증언에 관하여

이 부분 각 증언은 앞서 III. 3. 나. 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허위의 증언(위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증언이 위증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증언과 관련한 피고인 A의 위증교사죄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제1, 4증언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각 증언의 요지

이 부분 각 증언의 요지는,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A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과, 'C 측 고위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의 중이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다.

나) 이 부분 각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실행행위)

피고인 B의 이 부분 각 증언은 앞서 III. 3.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허위의 증언(위증)에 해당한다.

다) 이 부분 각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 인정여부(교사행위)

(1)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범의 범죄결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정범이 범죄를 결의함에 있어 주요한 영향력을 미친 교사자의 행위는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의 각 통화의 내용,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각 위증을 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피고인 A의 위 각 통화에서의 증언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각 통화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증언요청은 이 부분 각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이 부분 각 위증에 대한 피고인 A의 위증교사 고의 인정여부

(1) 정범의 고의 인정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이 부분 각 증언이 허위의 증언(위증)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위증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의 교사행위는 위 각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이후 피고인 B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개입하였을

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교사자의 정벌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지만, 이는 막연히 정범이 어떤 범죄를 저지룰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예견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등 범죄 구성요건적 표지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³⁷⁾

이 사건에 대하여 보전대,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위 각 통화 당시 (교사행위 당시)에는 피고인 B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통화 과정에서 이 부분 각 증언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진술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이 부분 각 증언의 내용은 진술서 초안 및 수정본에도 없는 내용이며,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 B이 변호사 G와의 통화 과정에서 먼저 언급한 내용인 점³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부분 각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피고인 A이 자신이 요청한 증인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어떠한 위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그 가능성을 예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인식이나 예견만으로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각 위증의 내용에 대한 정벌의 고의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37) 예를 들어, 교사자는 정범이 A를 살해한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정범이 B를 살해한 경우, 교사자에게 B에 대한 살인죄에 관하여 정벌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바, 마찬가지로 교사자가 막연히 정범이 살인범행을 저지룰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하여 정범이 B를 살해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B에 대한 살인죄에 관하여 정벌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38) 피고인 B은 변호사 G에게 "후보님이 고위직과 교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시장님(即한테 들었고", "주변으로 물자라고까지는 표현을 안 했던 거 같고요 A 변호사가 곤란할 거 아니냐. 움직임이 둔화될 거 아니냐는 취지로는 얘기를 했죠", "혈조를 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는 좀 표현이 이상하고요 그러면 A 변호사가 더 곤란해질 것 같더라는 식으로 C 측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라고 말하였다.

다는 부분의 경우,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대화 당사자인 E이나 피고인 B 이외의 사람들로서는 위 대화 당사자들이 직접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지 않는 이상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E의 전 수행비서이자 E의 선거캠프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E의 핵심측근이었고, 이 법정에서도 "E을 아침저녁에 한두번은 만났고, E으로부터 C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선거를 앞두고 C 방송에 나와 머리가 아프다는 등 C에 관한 이야기는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2024.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73-76, 116쪽), 피고인 B은 E과 검사사청 사건에 관하여 직접 대화, 논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화가 없었다는 사정을 전해 들었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위와 같은 대화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제1, 4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교사의 고의 인정여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통화(교사행위)할 당시, 피고인 B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각 통화 내용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부분 각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

여워 보인다).

(나) 가정적으로, 피고인 A이 (교사행위 당시 혹은 그 이후에) 피고인 B이 이 부분 각 증언을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① 제1, 4증언의 내용은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피고인 A이 더 불리해질 것'이라는 취지의 「검사사청 사건 당시 E의 생각이나 입장」에 대한 내용과 'E 측이' C 측과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의 'E 측과 C 측 사이의 협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다.

② 그런데 앞서 III.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사청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E은 정치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E 시장 측은 피고인 A을 고소하여 구속되기를 바랄 정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2024.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또한 앞서 본 D, AB, AD 등의 진술에 비추어 검사사청 사건 당시 E 측과 C 측 사이에 D 고소취소(혹은 D 선처부탁)와 관련된 접촉, 협의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피고인 B은 E의 핵심측근으로서 피고인 A에게 적대적인 E 선거캠프의 분리기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4증언의 내용은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파악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도 부합하는 내용인바, 피고인 A이 제1, 4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제1, 4증언 중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

기에 부족하다.

3) 제5증언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증언의 요지

이 부분 증언의 요지는 E과 C 측 사이에 'D는 취하고 피고인 A 쪽으로 몰아가자'는 협의는 D의 구속 후 피고인 A의 구속 전에 있었다는 것이다.

나) 이 부분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실행행위)

피고인 B의 이 부분 증언은 앞서 III. 3.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허위의 증언(위증)에 해당한다.

다) 이 부분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 인정여부(교사행위)

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의 각 통화의 내용,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위증을 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피고인 A의 위 각 통화에서의 증언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각 통화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증언요청은 이 부분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이 부분 위증에 대한 피고인 A의 위증교사 고의 인정여부

(1) 정범의 고의 인정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이 부분 각 증언이 허위의 증언(위증)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위증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의 교사행위는 위 각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이후 피고인 B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개입하였음

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위 각 통화 당시(교사행위 당시)에는 피고인 B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사행위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부분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가정적으로, 피고인 A이 (교사행위 당시 혹은 그 이후에) 피고인 B이 이 부분 증언을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증언의 요지는 'E와 C 측 사이의 협의의 시기'에 대한 것인바,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사청 사건 당시 E 측과 C 측 사이에 협의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통화 과정에서 E 측과 C 측 사이의 협의가 언제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③ 위 협의는 E 측과 C 측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A으로서의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이 부분 증언을 'E측과 C 측 사이에 D에 대한 고소를 취하고 피고인 A 쪽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고, 다만 그 협의가 D가 구속된 이후이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즉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는 증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이 부분 증언을 하기 전 'E 측과 C 측 사이에 협의의 중인 내용'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E의 성품상 C 측과 E이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를 한 건 아니고, E은 단지 D가 당시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A)도 공범이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고(별지

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이 부분 증언 이후에도 E와 C 측 고위관계자가 협의의 중인 내용은 '선거 전에 C를 상대로 한 이 일이 언론에 불거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실익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협의를 하였다고 들었다'라거나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하겠다' 또는 'C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하느냐에 대한 협의였다'라고만 증언하였는바(위 녹취서 14 쪽), 이 부분 증언을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교사의 고의 인정여부

앞서 III. 4. 마. 2) 라)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부분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제6증언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증언의 요지

이 부분 증언의 요지는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선거 전에 C를 상대로 한 이 일이 언론에 불거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실익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C 측 고위관계자와 C(D)에 대한 고소취소 협의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나) 이 부분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실행행위)

피고인 B의 이 부분 증언은 앞서 III. 3.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허위의 증언(위증)에 해당한다.

다) 이 부분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 인정여부(교사행위)

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의 각 통화의 내용,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위증을 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피고인 A의 위 각 통화에서의 증언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각 통화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증언요청은 이 부분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이 부분 위증에 대한 피고인 A의 위증교사 고의 인정여부

(1) 정범의 고의 인정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이 부분 각 증언이 허위의 증언(위증)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위증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의 교사행위는 위 각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이후 피고인 B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위 각 통화 당시(교사행위 당시)에는 피고인 B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통화 과정에서 이 부분 각 증언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진술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이 부분 각 증언의 내용은 진술서 초안 및 수정본에도 없는 내용이며,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 B이 변호사 G과의 통화 과정에서 먼저 언급한 내용인 점(39) 등에 비추어 보면, 교사행위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부분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가정적으로, 피고인 A이 (교사행위 당시 혹은 그 이후에) 피고인 B이

이 부분 증언을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이 부분 증언은 'E 측과 C 측 사이의 협의'의 내용 및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 전에 C를 상대로 한 이 일이 언론에 불거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실익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협의하였다'라는 취지의 '협의의 이유 또는 이와 관련한 E의 생각'에 대한 내용과 '위 협의의 내용은' C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하느냐에 대한 협의였다'는 취지의 '협의의 내용'에 관한 내용이다.

②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E 시장이 'C를 상대해서 실익이 있겠다. 언론에 거꾸로 나오면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고민했던 상황인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2024.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7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사청 사건 당시 E 측과 C 측 사이에 D 고소취소(혹은 D 선처부탁)과 관련된 협의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증언의 내용은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파악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도 부합하는 내용인바, 피고인 A이 이 부분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이 부분 증언 중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부분의 경우,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III. 4. 마. 2) 라) (1) (나) ③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들었다'는 부분)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교사의 고의 인정여부

39) 피고인 B은 변호사 G에게 "C를 상대해가지고 정말 실익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 굉장히 후보자 입장에서 고민이 될 때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앞서 III. 4. 마. 2) 라)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부분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그 밖의 사정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혐의 내지 합의

가) 피고인 A은 피고인들 사이의 각 통화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살펴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 측과 C 측 사이에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혐의 내지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 또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A을 주범을 모는 혐의 내지 합의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 D는 검사사청 사건의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물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사실은 없다. 회사(C)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도 "당시 E 시장으로부터 고소취하 약속을 받고 C로부터는 경정계 약속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A의 검사사청 범행 가담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은 없다. C 측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2) AE(당시 C 기획제작국 차장)는 검사사청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D에게 피고인 A을 주범인 것처럼 진술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화하였고(증거기록 5343, 5345, 5353, 5354쪽), 이 법정에서

- 73 -

(5) AB는 이 법정에서 "M 방송이 나간 후, 2002. 5. 말경에 검찰에서 D를 소환하는 연락이 왔다. D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왜 출두를 하라고 하느냐'고 물었고, D는 '그런 적이 없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D가 구속되기 전까지 C 내부에서는, 피고인 A, D가 검사사청을 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쪽), AD, AE는 D의 M 방송 전 D가 검사사청을 한 사실은 알았으나, 이러한 사정을 기획제작국의 국장인 AB 등에게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⁴⁰⁾ C 측 관계자인 국장 AB 등은 D가 자백하기 전까지는 D의 검사사청 사건 가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검사사청 사건 당시부터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하여 계속 의문을 제기하여 온 피고인 A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이르러 자신의 주장에 부합할 수 있는 증거를 탐색하면서 E의 핵심측근이었던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실제로도 피고인 B이 알지 못한다고 한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혐의 내지 합의'에 관한 증언은 요청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주범으로 모는 혐의'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점 있어서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기타 사정들

40) AD는 "당시에는 제보자가 누구인지 몰랐고, 피고인 A이 검사사청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관한 보고는 받지 않았다"라고도 진술하였는데(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 44, 49쪽), A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D은 피고인 A의 권여를 모른 채 D가 검사사청을 하였다든 사정만을 알았을 뿐이다.

서도 "당시 구속되어 있던 D를 접촉해서 자백하라고 권유하거나 피고인 A을 검사사청의 주범으로 몰라는 취지로 회유나 종용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29, 37쪽).

(3) AB(당시 C 기획제작국 국장), AD(당시 C 기획제작국 담당부장)은 이 법정에서 "검사사청 사건 당시 D에게 '피고인 A이 검사사청을 시킨 주범인 것처럼 진술하라'는 취지로 회유나 종용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20, 46쪽, 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28, 37, 40, 58쪽).

(4) 검사사청 사건 당시, D는 2002. 5. 31.경 제1회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2002. 6. 1.경 제4회 검찰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후 D는 2002. 6. 1.경 긴급체포되어, 2002. 6. 3.경 구속되었는데 2002. 6. 3.경 제5회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검사사청 사건 관여사실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D가 고소취소 약속이나 경정계 등을 대가로 회사(C)로부터 허위진술을 할 것을 지시·종용받아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면, D가 범행을 자백한 2002. 6. 3. 이전에 그와 같은 지시나 종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2002. 5. 31.경부터 2002. 6. 3.경 구속될 때까지 C의 관계를 만나거나 따로 연락한 적은 없고, 한동안 검찰에서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AB, AD도 이 법정에서 "D가 구속되고 며칠이 지난 후부터 면회가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E은 이 법정에서 "D가 긴급체포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그날 저녁에 검찰청에 찾아갔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D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종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74 -

가) 피고인 A은 2018. 12. 22.자 통화에서 피고인 B에게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저기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24.자 통화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발언의 이유나 의미를 'E이 2015.경 이미 사망하여 피고인 A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B이 알지 못하는 내용에 관하여 마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각 통화에서 "그냥 있는 대로 진짜 뭐, 뭐 세월도 지나버렸고", "그냥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건, 그날 뭐 통화할 때에 예를 들어 우리 B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아... 일단은 어,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들은 이야기, 예... 뭐 직접은 아니지만", "음...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발언의 이유나 의미를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시장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는 것이거나 '피고인 B이 직접 경험하거나 관여한 부분은 아니지만 전해들어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하여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피고인 A에게 위증교사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나) H은 2023. 4. 24.경 수사기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

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J의 진화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검사사청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419쪽), 이러한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H의 친분이 두터운 점을 이용하여 **도지사 정책비서관 J을 통해 H에게 피고인 B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H이 피고인 B에게 검사사청 사건에 관하여 물어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위증교사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 A이 2018. 12. 22.자 통화에서 피고인 B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줬다고 하자 피고인 B은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라고 대답하였는바, 이를 피고인 B이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대로 증언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변론요지서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우리가 재판에서 주장했던 거'라고도 말하고, 피고인 B의 위 말을 들은 후 피고인 B에게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시장님(E)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상기해달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필요한 증언(위증)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위증할 것을 예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B은 2019. 1. 24.경 증인신문기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전날인 2019. 1. 23. AA에 'A, 검사사청 또 법정엔 오른다'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자 같은 달 23. 및 24.경 J, L, 변호사 G에게 '힘이 든다. 괴롭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날인 2019. 2. 13.경 변호사 G에게 '변호사님.. 잘 계셨는지요? 낼 재판에 증인 출석 예정인데 내용에 추가 및 변동사항 있는지요?'라고 물었고, 변호사 G은 '없습니다. 그냥 그 질문 그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라고 회신하기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위증교사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IV.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제2, 3증언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위증죄(제1, 4, 5, 6증언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_____
	판사	안근홍	_____
	판사	김태형	_____